입학 전형료 반환 신청서

(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)					
원서접수	: 번호 :			접수일자 : 2023	
지원자	성 명			연 락 처	
	생 년 월 일				
	모 집 단 위	농업생명과학대학 푸드테크학과(계약학과)			
	전 형 구 분	2023학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푸드테크학과(계약학과) 신입생 모집			
반환	요청 사유	□ 착오 과납 □ 입원·사망 □ 천재지변 □ 대학 귀책 사유			
반환 계좌 정보					
금융기관명				예금주명	_
7	ᆌ좌번호				
위 반환 요청 사유에 해당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합니다.					
		2023년	월	일	
			지원자 보호자		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
서울대학교 총장 귀하					
1. 반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첨부서류 2. 증빙서류 □ 의료기관 입원 확인서 □ 기타()					

[입학 전형료 반환 안내]

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 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- 2.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
-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
-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
- ※ 위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※ 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 포함)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 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※ 반환 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 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.